▨ 응용논문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Tax Support Systems for Small Business

宋 東 燮.**
Song, Dong-Seob
金 載 俊***
Kim, Jae-Jun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ise and grope for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betterment of both the present tax system facing the country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small businesses in order to develop small businesse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m; as a result, this paper lays a strong emphasis on the point that small businesses must take a more tax reduction than big businesses in view of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small businesses try to exert itself to provid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hat although the administration helps frame the policy of small businesses toward reduction in tax, it must set up strong measures to help the tax reduction of them centering around competitive businesses.

## 1. 서 론

IMF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될 것이며, 특히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외환위기에 의한 IMF자금지원은 정부의 재정축소·부실금융기관정리·기업구조조정 등의 제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IMF체제는 IMF규약에 맞는 세제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원되어온 금융특혜는 축소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의 부도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키며, 특성상 대기업의 하청기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 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여주전문대학 세무회계과 조교수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의 축소 및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감속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으로 대외적인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 수출촉진 및 생산설비증대, 기술 및 우수인력확보 등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협동화 및 계열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의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효율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장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중소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함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규모 및 자본이 영세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은 기업규모, 경영형태, 종업원수, 자본(자산)규모, 판매액(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개념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종업원 규모나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각종 공제 · 면제 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중소기업 은행법[1](1961년 7월)이다. 또한 1961년에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2년에 국민은행법, 1966년에 중소기업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1974년에 신용보증기금법, 1975년에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고 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1978년에 중소기업자간의 과당경쟁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과도한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1981년에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1982년에 중소기업의 근대화와 협동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1984년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986년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도소매진흥법, 1989년에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4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996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 ·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

1) 중소기업 은행법에서 정해놓은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100인 이하, 광업은 200인 이하, 총자산액은 2천만원 이하의 제조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중소기업의 범위(감령 제2조)

조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세법상의 각종 공제·면제 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2.1 중소기업해당사업

① 세법상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2.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음 각호의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본다.(감칙 2-4-4 … 13)

①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② 채석업(광업)
③ 도축장 경영업(제조업)
④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
⑤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초류 및 수산물등을 염장, 건조, 탈수, 훈제, 통조림 및 급속 냉동하는 사업(제조업)

그러나 지입료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감칙 2-4-5 … 13)

2.2.3 중소기업의 주된사업의 판정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주된 사업의 판정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기타의 사업에 비해 사업별 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중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본다.(감칙 2-4-10 … 13)

사업년도 기간중에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이를 겸영한 것으로 본다. (감칙 2-4-11 … 13)

2.3 중소기업의 판정기준(감령 제2조 제1항)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표 1>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종업원수의 구분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종업원수의 규모기준

이 중소기업 해당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도 동표에 의한 자산총액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2.3.1 종업원수 규모기준

(1) 일반적 기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 200인, 도소매업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표 1>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주주인 임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또한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표 1>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제2조 관련)

| 구분 / 업종별 | 소기업자 | 중기업자 |
|---|---|---|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하인 자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300인 이하인 자 |
|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하인 자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200인 이하인 자 |
| 상업 기타 서어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자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6인 이상 20인 이하인 자 |

따라서 사업년도중 어느 한 달만이라도 월말 현재 종업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업종별 기준

종업원수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이외에도 노동집약적 업종 또는 자본집약적 업종 등 업종의 특성에 따라 종업원수의 구분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일반적인 기준에 불구하고 동 표에서 정한 종업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2.4 업종별 자산총액 특례기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은 동 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자본집약도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단위 : 억원)

| 표준산업분류 | 해 당 업 종 | 자 산 총 액 |
|---|---|---|
| 10 | 석탄광업 | 200 |
| 10102 | 연탄 및 기탕 응집 무연탄 생산업 | 500 |
| 12 | 우라늄 및 트륨광업 | 200 |
| 13 | 금속광업 | 200 |
| 14 |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2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500 |
| 16 | 담배 제조업 | 30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500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500 |
| 19 |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 400 |
| 19111 | 원피 가공업 | 60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500 |
| 21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700 |
| 22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 700 |
| 23 | 크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600 |
| 24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700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600 |
| 2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500 |
| 27 | 제1차 금속산업 | 700 |
| 28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700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800 |
| 30 |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제조업 | 700 |
| 30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 800 |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800 |
| 32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700 |
| 33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700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800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700 |
| 36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400 |
| 37 |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500 |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91-1호(1991.9.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 3. 중소기업의 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 3.1 중소기업의 현황

규모의 영세성, 자본구조의 취약성, 기술수준의 낙후성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단·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원은 제약적·제한적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3> 중소광공업의 현황

| | | 1985 | 1990 | 1993 | 1994 | 증가율 '94/'93 |
|---|---|---|---|---|---|---|
| 사업체수 (개, %) | 전체 | 45,933 | 70,455 | 90,506 | 92,578 | 2.29 |
| | 중소기업 | 44,803 (97.5) | 69,240 (98.3) | 89,544 (98.9) | 91,645 (99.0) | 2.35 |
| 종업원수 (천명, %) | 전체 | 2,529 | 3,080 | 2,931 | 2,965 | 1.16 |
| | 중소기업 | 1,413 (55.9) | 1,898 (61.6) | 2,015 (68.8) | 2,050 (69.1) | 1.74 |
| 생산액 (억원, %) | 전체 | 780,757 | 1,786,181 | 2,577,760 | 3,010,139 | 16.77 |
| | 중소기업 | 277,768 (35.6) | 765,007 (42.8) | 1,239,029 (48.1) | 1,448,934 (48.1) | 16.94 |
| 출하액 (억원, %) | 전체 | 775,288 | 1,765,525 | 2,562,262 | 2,978,455 | 16.24 |
| | 중소기업 | 274,523 (35.4) | 754,144 (42.7) | 1,226,502 (47.9) | 1,433,373 (48.1) | 16.87 |
| 부가가치 (억원, %) | 전체 | 274,955 | 718,845 | 1,097,151 | 1,308,197 | 19.24 |
| | 중소기업 | 103,722 (37.7) | 319,944 (44.5) | 555,410 (50.6) | 647,849 (49.5) | 16.64 |

주 : * 중소기업은 종업원 5 - 299인 기준
*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해당년도

중소광공업의 현황을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사업체수는 전체기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94년도(전년대비)의 증가율은 2.29%이며,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전체기업의 증가율 보다 다소 높은 2.35%를 나타내고 있다. 종업원수에서도 전체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1.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1.74%로서 전체기업의 증가추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액 및 출하액도 전체기업이 전년대비 각각 16.77%, 16.24%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각각 16.94%, 16.8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에서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19.24%로, 중소기업의 16.6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사업체수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년대비(94년도) 2.82%이며,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전체기업의 증가율 보다 다소 높은 2.88%를 나타내고 있다. 종업원수에서도 전체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1.54%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1.96%로서 전체기업의 증가추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액 및 출하액도 전체기업이 전년대비 각각 16.93%, 16.42%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각각 17.21%, 17.1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에서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19.43%로, 중소기업의 16.9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광공업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중소제조업의 현황

| | | 1991 | 1992 | 1993 | 1994 | 증가율 '94/'93 |
|---|---|---|---|---|---|---|
| 사업체수 (개, %) | 전체 | 72,213 | 74,679 | 88,864 | 91,372 | 2.82 |
| | 중소기업 | 71,105 (98.5) | 73,657 (98.6) | 87,913 (98.9) | 90,447 (99.0) | 2.88 |
| 종업원수 (명, %) | 전체 | 2,918,015 | 2,801,389 | 2,885,349 | 2,929,898 | 1.54 |
| | 중소기업 | 1,853,299 (63.5) | 1,844,633 (65.8) | 1,986,922 (68.9) | 2,025,812 (69.1) | 1.96 |
| 생산액 (억원, %) | 전체 | 2,056,990 | 2,268,166 | 2,559,261 | 2,992,462 | 16.93 |
| | 중소기업 | 917,554 (44.6) | 1,038,787 (45.8) | 1,223,610 (47.8) | 1,434,205 (47.9) | 17.21 |
| 출하액 (억원, %) | 전체 | 2,025,286 | 2,245,993 | 2,543,990 | 2,961,665 | 16.42 |
| | 중소기업 | 900,314 (44.5) | 1,025,323 (45.7) | 1,211,171 (47.6) | 1,418,759 (47.9) | 17.14 |
| 부가가치 (억원, %) | 전체 | 863,665 | 960,180 | 1,085,217 | 1,296,109 | 19.43 |
| | 중소기업 | 395,635 (45.8) | 456,619 (47.6) | 545,494 (50.3) | 637,682 (49.2) | 16.90 |

주 : * 중소기업은 종업원 5 - 299인 기준
*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해당년도

<표 5> 중소건설업의 현황

| | | 1991 | 1992 | 1993 | 1994 | 증가율 '94/'93 |
|---|---|---|---|---|---|---|
| 사업체수 (개, %) | 전체 | 19,477 | 24,995 | 30,788 | 32,561 | 5.76 |
| | 중소기업 | 18,418 (94.6) | 23,799 (95.2) | 29,506 (95.8) | 29,212 (89.7) | -1.01 |
| 종업원수 (명, %) | 전체 | 1,077,291 | 1,265,004 | 1,288,011 | 1,460,820 | 13.42 |
| | 중소기업 | 381,914 (35.5) | 447,289 (35.4) | 585,317 (42.2) | 660,629 (45.2) | 12.87 |
| 총공사액 (억원, %) | 전체 | 404,143 | 517,722 | 576,202 | 680,571 | 18.11 |
| | 중소기업 | 124,567 (30.8) | 161,339 (31.2) | 211,452 (36.7) | 258,216 (37.9) | 22.12 |
| 부가가치 (억원, %) | 전체 | 200,613 | 254,301 | 292,110 | 338,503 | 15.88 |
| | 중소기업 | 62,032 (30.9) | 77,649 (30.5) | 116,021 (39.7) | 141,091 (41.7) | 21.61 |

주 : * 중소기업은 종업원 1 - 199인 기준
*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해당년도

<표 6> 중소운수업의 현황

| | | 1991 | 1992 | 1993 | 1994 | 증가율 '94/'93 |
|---|---|---|---|---|---|---|
| 사업체수 (개, %) | 전체 | 146,031 | 157,412 | 161,745 | 171,612 | 6.10 |
| | 중소기업 | 145,352 (99.5) | 157,240 (99.9) | 161,554 (99.9) | 171,422 (99.9) | 6.11 |
| 종업원수 (명, %) | 전체 | 645,940 | 665,555 | 677,627 | 693,879 | 2.40 |
| | 중소기업 | 476,664 (73.8) | 495,853 (74.5) | 502,601 (74.2) | 518,502 (74.7) | 3.16 |
| 운수수입 (억원, %) | 전체 | 164,694 | 189,841 | 219,216 | 253,767 | 15.79 |
| | 중소기업 | 92,709 (56.3) | 105,100 (55.4) | 117,503 (53.6) | 137,285 (54.1) | 16.84 |
| 부가가치 (억원, %) | 전체 | 100,133 | 113,768 | 126,572 | 145,912 | 15.28 |
| | 중소기업 | 60,355 (60.3) | 68,730 (60.4) | 75,491 (59.6) | 87,665 (60.1) | 16.13 |

주 : * 중소기업은 종업원 1 - 299인 기준
*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 항공운수업은 제외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해당년도

중소건설업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사업체수에서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년대비(94년도) 5.76%이며,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전체기업의 증가율 보다 낮은 -1.01%의 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업원수에서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전년대비 13.4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12.87%로 전체기업의 증가추세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총공사액 및 부가가치도 전체기업이 전년대비 각각 18.11%, 15.88%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각각 22.12%, 21.61%로
전체기업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운수업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사업체수에서는 전체기업의 증가율이 전년대비(94년도) 6.10%이며,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전체기업의 증가율 보다 조금 높은 6.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업원수에서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전년대비 2.4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3.16%로 전체기업의 증가추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운수수입에서도 전체기업의 증가율이 15.79%,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16.84%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에서도 전체기업이 전년대비 15.28%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16.13%로서 전체기업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광공업과 중소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현황은 <표 7>과 같다. 사업체수에서는 전체기업의 증가율이 전년대비(94년도) 0.55%로 증가율이 매우 낮으며,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전체기업의 증가율 보다 조금 낮은 0.47%로 증가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수에서는 전체기업의 비중이 전년대비 7.9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7.72%로 전체기업의 증가추세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판매액에서도 전체기업의 증가율이 14.48%,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12.37%로 전체기업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투자 현황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업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1995년 현재 8.3%의 수준에 있다. 또한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1991년에 0.24%, 1993년에 0.42%, 1995년에 0.31%로서 오히려 증가비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중소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현황

| | | 1990 | 1993 | 1994 | 증가율 '94/'93 |
|---|---|---|---|---|---|
| 사업체수 (개, %) | 전체 | 800,509 | 926,168 | 931,244 | 0.55 |
| | 중소기업 | 796,090 (99.4) | 918,494 (99.2) | 922,852 (99.1) | 0.47 |
| 종업원수 (명, %) | 전체 | 1,862,352 | 2,236,391 | 2,413,344 | 7.91 |
| | 중소기업 | 1,683,876 (90.4) | 1,895,639 (84.8) | 2,042,058 (84.6) | 7.72 |
| 판매액 (억원, %) | 전체 | 909,242 | 1,464,152 | 1,676,168 | 14.48 |
| | 중소기업 | 690,954 (76.0) | 1,019,253 (69.6) | 1,145,339 (68.3) | 12.37 |

주 : * 중소기업은 종업원 1 - 19인 기준
*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해당년도

<표 8> 중소제조업 기술개발투자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매출액(십억원) | 87,883 | 95,799 | 105,049 | 121,588 | 140,342 |
| 기술개발투자업체수 | 3,653 | 4,821 | 5,645 | 6,334 | 6,519 |
| 전중소기업대비(%) | 5.4 | 6.8 | 7.7 | 8.2 | 8.3 |
| 기술개발투자액(백만원) | 208,214 | 247,464 | 441,782 | 497,336 | 436,810 |
| 업체당평균투자액(백만원) | 57.0 | 51.3 | 78.3 | 78.5 | 67.0 |
| 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율(%) | 0.24 | 0.26 | 0.42 | 0.41 | 0.31 |

주 : * 종업원 5 - 299인 기준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해당년도

<표 9>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설비투자총액 (십억원) | 4,219 (24.1) | 4,446 (5.4) | 4,871 (9.6) | 5,848 (20.1) | 6,513 (11.4) |
| 기계장치투자액 (십억원) | 2,292 (28.5) | 2,383 (4.0) | 2,711 (13.8) | 3,102 (14.4) | 3,615 (16.5) |

주 : * 종업원 5 - 299인 기준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기업은행,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의 추이와 특징, 1996.6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현황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설비투자총액은 1991년에 4,219십억원, 1993년에 4,871십억원, 1995년에 6,513십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비중은 1995년에 단지 11.4%를 나타내고 있다. 기계장치투자액에서도 설비투자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율은 1995년에 16.5%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 중소기업대출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잔액기준 | 총 대 출(A) | 649,061 | 745,028 | 834,067 | 992,976 | 1,105,385 |
| | 중소기업(B) | 368,560 | 419,722 | 494,293 | 583,425 | 669,827 |
| | B/A(%) | 56.8 | 56.3 | 59.3 | 58.8 | 60.6 |
| 순증기준 | 총 대 출(A) | 108,816 | 95,967 | 89,039 | 158,909 | 112,409 |
| | 중소기업(B) | 68,514 | 51,162 | 74,571 | 89,132 | 86,402 |
| | B/A(%) | 63.0 | 53.3 | 83.8 | 56.1 | 76.9 |

주 :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총원화대출금기준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실적 현황은 <표 10>에 나타나 있다. 잔액기준 총대출액 대비 중소기업 대출액은 1991년 56.8%, 1992년 56.3%, 1993년 59.3%, 1994년 58.8%, 1995년 60.6%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증기준에서도 1991년 63.0%, 1992년 53.3%, 1993년 83.8%, 1994년 56.1%, 1995년 76.9%의 높은 대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3.2. 조세지원제도

기술부족,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던 정부정책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해 왔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점점더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술 · 자금 · 인력 등이 열악한 상태에서의 자율경쟁은 그 의미가 상쇄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이경쟁력을 갖는데 정책적인 지원수단인 정부의 보조금제도, 금융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는 제약적 · 한시적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보조금지원제도나 금융지원제도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중소기업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방법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비과세제도 등의 직접지원제도와 준비금, 특별상각 등의 간접지원제도가 있다.

### 3.2.1 직접지원제도

####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적게 되도록하여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이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유효하게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게 된다(삼일회계법인, 1995). 이 제도는 설비투자를 요하지 않는 산업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세액공제

직접지원제도의 하나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정부정책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또는 지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간의 형평을 유지하며,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조세를 이용한 국고보조의 형태를 취한다. 이 제도는 투자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가능하며, 설비투자를 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이 없다.

(3) 세액감면

직접지원제도의 하나인 세액감면은 일정기간동안 특정의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즉시적이며,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이 없으며, 소득의 구분계산이 복잡하다.

(4) 비과세제도

직접지원제도의 하나인 비과세 소득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을 말하며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를 이용한 국고보조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 제도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즉시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2.2 간접지원제도

(1) 준비금

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 또는 투자에 대비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산하여 납기연기효과를 주는 일종의 징수 이연제도이다. 이는 과세이연에 의한 재정자금의 무이자 융자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 제도는 투자자금의 자체조달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준비금제도는 세금을 감액 내지 비과세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일시에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가중된다.

(2) 특별상각

특별상각은 일반상각비의 일정률 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간접지원제도이며, 준비금과 마찬가지로 납기연기효과를 주는 징수 이연제도이다. 특별상각제도는 준비금과 같은 재정자금의 무이자 융자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기금융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3 현행 세법상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감법 제6조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사업용부동산의 취득 · 소유에 따른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 등 조세지원, 창업에 따르는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자금지원, 사업성검토, 경영 ·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1994).

① 창업의 범위

현행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 광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 · 엔지니어링 사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물류산업을 말한다(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②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된다(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 기업의 포괄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형태의 변경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계속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창업일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의미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④ 조세감면의 내용

㉮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감법 제6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2]하는 경우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한다. 첫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둘째,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 그 후 2년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30%를 감면하고 있다.

㉯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감법 제113조)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창업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며,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농어촌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임.

㉰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감법 제114조)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창업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창업중소기업의 재산세 등의 감면(감법 제115조)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창업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2)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①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감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사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보험업[3], 부가가치의 통신, 연구 및 개발업, 무역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인 산업 및 자본재산업에 대해서는 5%)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사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보험업[4], 부가가치의 통신, 연구 및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기술개발비, 기술개발용역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 기술개발용역비 등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둘째,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의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15%, ② 중소기업의 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로 한다.

③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법 제10조)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함.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함.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법 제25조)

내국인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중 기업의 임의대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5%로,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또는 합리화시설의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로 한다.

둘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은 취득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법 제26조)

내국인의 199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정책상의 목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유통근대화,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 또는 확장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임시투자세액공제(감법 제27조)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법 제88조)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5]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감법 제17조)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산입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내국인으로수출사업 및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다음의 사업자이다.

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자

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 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5)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함.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외화수입금액의 1%이다.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한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5) 협동화 및 계열화를 위한 조세지원

① 단지조성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감법 제64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지법 제280조)

첫째,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둘째,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셋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넷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 설치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제7조제2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감법 제60조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6)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① 증자소득공제(감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청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영리법인에 한하며, 비영리법인이나 외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안는다.

영리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등으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4개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text{공제된자본금액} \times \frac{\text{당해사업연도중자본변경등기후의월수}}{12} \times \text{공제율}$$

② 사업소세 면제(지법 제249조)

영세기업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수도권 및 직할시의 전지역, 기타시의 전지역,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의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을, 사업소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 재산할을 면세하고 있다.

##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4.1.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확대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확대 하였다. 특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확대는 그동안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 보다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정 업종에만 국한 되어있는 기술창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에는 조세지원이 제약적이며, 또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목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갖는데 있으므로 실질적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조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같은 지식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성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세제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 4.1.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의 연장

기업이 창업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로 인한 자금경색, 시장개척의 어려움, 제품의 상품화 등으로 많은 경영 애로사항이 발생하며, 기업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현행의 조세지원제도인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감면 제도는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조세유인효과를 갖게 하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100%감면하고, 그후 2년간 50%감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감면하고, 그후 5년간.50%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1.3 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현행 등록세의 50%(법인 75%), 취득세의 75%,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창업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조세유인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감면을 기한없이 재산세의 50%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 4.2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 4.2.1 기술개발준비금의 개선

기술개발비, 연구시설 등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를 유예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는 현행 기술개발준비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 및 자본재 산업 5%)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낮으므로 실질적인 조세효과는 미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입금액의 3% 감면효과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4.2.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확대

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율은 <표 2-8>에서와 같이 1994년 0.41%, 1995년 0.31%의 수준에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출은 경색적이며,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따라서 정책목적상 정부의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현행 제도하에서 수혜를 받은 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임금수준 및 근무환경의 미비로 인한 고급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실제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현행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 15%를 상향조정하고, 고급전문기술인력의 기술수당 등 기술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3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표 2-9>에서와 같이 1994년 5,848십억원, 1995년에 6,513십억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가 했지만 설비투자부문 역시 자금부담은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으로 설비투자를 장려하여 노동력 중심의 산업구조를 공장자동화 시스템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행 연구시험용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 직업훈련용시설 및 신기술사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고 있으나, 각각 20%와 10%씩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산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30%씩 세액공제를 하여 설비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 4.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조달능력이 제한적이며, 특히 시설자금을 운용하여 시설투자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능력이 용이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 부문에서는 투자금액의 5%를, 노후시설 개체 및 첨단기술설비에서는 3%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자금의 조달에도 용이하지 않은 현황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은 미미하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확대를 통해 확대된 부문의 공제액을 유보시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4.3.2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의 영세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감면제도와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제도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혜택은 미미할 뿐 아니라 자금의 영세성을 더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확대하고,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범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3.3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사회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실시하는 복지시설은 작게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크게는 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가져온다. 따라서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유인을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4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 4.4.1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개선

수출손실준비금과 동일한 세금이연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의 익금산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5 협동화 및 계열화를 위한 조세지원

#### 4.5.1 단지조성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

규모가 영세하고,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단지조성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좀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4.5.2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성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단지조성은 중소기업간의 협력사업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간의 합병, 중소기업간의 기술제휴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면제된 세액공제 부문은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4.6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4.6.1 증자소득공제 확대

영리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한 경우 증자액의 10%를 2년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증자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4.6.2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조세면제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WTO의 규약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세금우대제도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주식보유시·매각시의 세금우대제도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5. 결 론

WTO체제는 기업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며, 그동안 정부에 의해 보호되어온 국내기업은 개방화의 환경속에서 적응을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에 의한 IMF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규모의 영세성, 자본구조의 취약성, 기술수준 및 고급인력의 부족, 시설의 낙후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연적이고 우선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목적상 상당수준의 조세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배분"에 의해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장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기간이 장기이면 그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이다.

둘째,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아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비용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의 개선 및 세액공제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으로 볼 때 다른 조세지원제도보다 미흡하다. 따라서 여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사업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출에 대한 손실은 세금이연효과를 연장하고,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환차손준비금제도를 설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협동화 및 계열화를 위한 조세지원은 물류비용의 절감, 기업간 기술제휴 등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개선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가 요구된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증자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세금우대제도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현행 조세지원의 제문제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조세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성결여와 제약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취약한 경쟁력을 단·장기적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에도 원가-효익측면을 고려하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국세청, 법인세신고 안내, 1997.

[2] 권순철,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7호, 한국세무학회, 1996.

[3] 김상호,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관한연구', 세무학연구 제4호, 한국세무학회, 1993.

[4]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편람, 1995.

[5]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법인세법, 1995.

[6] 유동길외, 한미일대만의 중소기업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9.

[7]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월보, 1997.

[8] ————————, 한국의 중소기업, 1995~1996.

[9]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의 세제·세정 이용 및 장애실태 분석, 1996.

[10] ————————————,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994.

[11] ————————————, 중소기업현황 1996.

[12] Baum Beak, C. M., How to Origanize and Operate a Small Busine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5).

[13] Chesterman, M., Small Business, Sweet & Maxwell LTD, 1977.

[14] Harmon, p., Small Business management-a practical approach, 1979.

[15] Scholes, M. S. and Mark A. Wolfso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92).

[16] Wang, S. W.,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A test of Firm's success," Accounting Review, 1991.